

<범위>

건축물에 경량 세라믹 불연 단열재를 개구부 상단 및 층 사이에 수평으로 빗창을 갖는 L형 앙카 및 전용 모르타르를 이용, 수직 화재확산 방지구조를 형성하고, 비 불연성 단열층은 두께 5mm 이상 전용 모르타르로 마감하여 화염 및 고온에 의한 외벽의 수직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외단열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63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스타빌엔지니어링(김웅회) ② 쌍용건설(주)(김석준)
③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윤세한)
④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정종화, 유태원)

나. 전화번호 : ① 044-566-8289 ② 02-3433-7114 ③ 02-3438- 8000 ④ 02-6333-3000

2. 명칭 : 열교 차단재를 사용한 건축물 창 주위의 열교 저감 시공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단열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건물 창호 주위에 마감 및 시공성을 위해 단열재를 결손시키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창호주변의 결로 현상을 저감하기 위하여 단열재 결손을 방지하는 공법으로 열교 차단재를 사용한 창 주위를 열 손실 방지 및 내외부 마감 품질 향상을 목적을 갖는 열교 차단재를 사용한 건축물 창 주위의 열교 저감 시공 공법이다

<범위>

건축물의 벽체와 창호 사이 열교 저감에 의한 에너지 손실 최소화와 시공의 편의성을 위해 본체와 메움체로 구성된 열교 차단재를 콘크리트 벽체와 타설 일체로 시공하고 벽체 외단열과 연속성을 갖도록 시공하는 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49호

엑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엑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퓨처플레이	2019-32	'19.5.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80, 5층
시저스파트너스 주식회사	2019-33	'19.5.2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12-1220
충북대학교기술지주 주식회사	2019-34	'19.5.28.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4길 45, 에이동 502호

●금융감독원공고제2019-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조치

금융감독원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금융감독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취득금액	조치근거
유동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3, 107동 1402호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통보	4,572,030원	자본시장법 제172조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단기 매매차익 취득사실에 대한 조치예정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9.7.5.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지분공시팀 우명언 선임조사역(☎02-3145-8493)